

제목 : 내용증명에 확정일자 효력 있나요?

사례 : 채권양도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합니다. 내용증명으로 보내도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나요?

결론 :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내면, 확정일자를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.

해설

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되었다고 기재된 일자에 작성된 것으로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서에 특정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. 언제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중요한 경우(예컨대 그 통지 일자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는 채권양도 통지의 경우)에는 그 통지의 날짜가 공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변경이 불가능해야만 할 것입니다.

이러한 확정일자를 받음에 있어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.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에 임의로 제3자가 변경할 수 없는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.

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작성한 동일증명서 3통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「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」는 인을 날인한 뒤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 발송하며 1통은 마치 영수증과 같이 발송인(제출인)에게 반환해 줍니다.